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69 호 2024. 8. 22.(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73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7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75호[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77호[공 고].....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83호[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안” 열람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85호[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결산) 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86호[공 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88호[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91호[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95호[공 고]..... 5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7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우대화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로 27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4. 10. 5.(토) 16:00 ~ 19:00 ○ 2024. 10. 19.(토) 16:00 ~ 19: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7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서성일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3길 26-1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4. 10. 13.(일) 13:00 ~ 17:00 ○ 2024. 11. 17.(일) 13:00 ~ 17: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시행 '24.11.23.)에 따라 건강검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
- 나. 보건소 진료범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진료비의 산정 및 징수(안 제3조~제4조)
- 다.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안 제5조~제6조)
- 라. 납부, 반환, 추가징수(안 제7조~제9조)

3. 관계법령

- 가.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및 제25조(진료비)
-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마.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52)241-8111, 팩스번호 : 052)241-8109
- 전자우편(E-mail) : thoris19@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한 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추가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증명 발급 수수료(제5조 관련)

구	분	기준	총 징수금액(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별도 검사료 등
1.	건강진단서	1통	1,000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 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1,000	
3.	일반진단서	1통	1,000	
4.	특별진단서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10,000	
6.	사망진단서	1통	1,000	
7.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1,000	
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	
9.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10.	1통 초과발급	1통	500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수수료 (원)	비 고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면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면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면제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제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제	
6.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7.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는 진 료비에 한해 전 액 감면	
8.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만65세 이상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료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진료건당 30일 이내 처방받은 환자에 한해 투 약 1일 진료수가 적용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한방과	침·뜸(灸)·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뜸(灸)·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뜸·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 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177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대운**(주) 조**		
주소	울산광역시 울*군 **읍 **박길 1-*		
점용 위치	○ 연암동 424-1번지 일원 (연암동 1096-2번지 도로)	노선명	○ 소3-120
점용 목적	○ 오수관로 매설	점용 면적	○ L = 24m ○ A(일시) = 43.2m ² ○ A(계속) = 1.20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5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8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 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안” 및 결정사유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7	국지 도로	136	소로 2-136	소로 2-162	일반 도로	-	-

나. 도로 입안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A	· 노선신설 (B=7m, L=136m)	· 현황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한 : 2024. 8. 22. ~ 2024. 9. 5. (14일간)

3.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4. 열람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241-7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안” 열람 의견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출의견]

2024. . . .

제출자 : (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4 - 1185호

2024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결산)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4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결산)』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우리 구의 2023년도 재정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34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97억원이며, 전체 세입에서 21.5% 차지합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00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36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2023년 재정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368억원) 보다 4,33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841억원)보다 544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73억원)보다 2,473억원 적습니다.
 - 우리 구의 2023년 채무액은 없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채무액은 31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779억원)과 비교하여 2,892억원이 적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지만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고, 채무가 없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홈>정보공개>재정공시>재정(결산)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최선희(052-241-7115)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186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동*시가스 대표이사 *재*		
주소	울산광역시 *구 *포* *60-*0		
점용 위치	○ 화봉동 화산3길 31 (화봉동 1553번지 도로)	노선명	○ 소2-445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6m ○ A(일시) = 10.8m ² ○ A(계속) = 0.36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188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행정안전부, '24. 2. 20.)에 따라 본인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 또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안 제1조)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하도록 병기(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3. 관계법령

-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주민자치과
- 2) 전화번호 : 052)241-7266, 팩스번호 : 052)241-7269
- 3) 전자우편(E-mail) : ekrud1016@korea.kr

6. 기타사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1호 중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삭제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p>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p> <p>(생 략)</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의 요건(재산세 납부실적 5,000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고지서(대학학자금 용자신청시) 4. 사업계획서(사업자금 용자신청시) 	<p>[별지 제1호서식]</p> <p>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p> <p>(생 략)</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보증인의 요건(재산세 납부실적 5,000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고지서(대학학자금 용자신청시) 4. 사업계획서(사업자금 용자신청시)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p>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p> <p>(생 략)</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p>[별지 제1호서식]</p> <p>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p> <p>(생 략)</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p>[별지 제2호서식]</p> <p>공공용지 사용 동의서</p> <p>(생 략)</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p>[별지 제2호서식]</p> <p>공공용지 사용 동의서</p> <p>(생 략)</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관계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 행정안전부 주민과-1567(2024. 2. 20.)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 추진배경

- '18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실태조사 후, 반기별 감축을 독려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존치사무 다수 존재
- '18년 이후 신설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반영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 제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

< 준비기준안 >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폐지 원칙
 - ※ 필요 시 근거 규정 마련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기
- 근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정비
- 조문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한 경우 별표·별지에도 반영
- 신분확인을 위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 위임자의 의사확인을 위한 대리의 경우 기 폐지된 사례를 참고하여 폐지

< 감축계획 >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있는 사무는 폐지 가능 여부 검토
- 인감증명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제출 가능토록 근거 법령 등 정비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 성 자 : 주민자치과 행정8급 백서연(241-7266)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안정자금의 용자신청자 선정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기금의 용도별 관리 운용

제1절 생활안정자금 계정

제3조(용자대상)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대상
은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용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2.7.14.>

1.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다만, 질병·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

제4조(용자금액 등) ① 가구당 용자액은 다음의 각 호를 초과 할수 없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2.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1천만원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 입학금 및 등록금등 범위내의 금액

② 용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이나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총 용자원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용자는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용자신청) ① 생활안정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② 생활안정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용자 신청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구청장을 채권자로 한 계약에서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용자금의 회수) 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분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 받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2절 노인복지자금 계정

제8조(노인복지자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 사용한다.

1.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2.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및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신청)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용도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자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 ① 노인복지자금의 지원은 계정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사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절 기초생활보장자금 계정

제13조(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5. <삭제 15.12.31.>

제1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제13조제1호의 자금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의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대여자금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1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이나 사업장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예정)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대상자 결정통보)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보증) 제1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장 회계

제21조(세입·세출) ① 기금의 세입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세출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징수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분임징수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회계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좌의 설치·관리와 청인관리는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②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기 위하여 계정별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1. 생활안정자금

가.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2. 노인복지자금

가. 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3. 기초생활보장자금

가. 기초생활보장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이차보전금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

다. 기초생활보장자금(사업자금대여)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제4장 보칙

제24조 <삭제 15.12.31.>

제25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용자받은 개인·기관·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중복용자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은 대출금 상환 이전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27조(감면조치)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액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8조(상환통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상환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의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12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용자금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용자금 반환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용자금 상환 및 반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신청액	원정 (₩)		
용도			
용자기간		상환만기일	

가족사항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인)

위 신청인이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아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다는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의 요건(재산세 납부실적 5,000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고지서(대학학자금 용자신청시)
4. 사업계획서(사업자금 용자신청시)

□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
-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
-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
- 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부칙<제565호, 2020.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축물 현황	소재지					
	용도		면적(m ²)			
	구조/층수					
	석면 유무					
신청대상 (선택)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토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m ²)			
건물 현황	규모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자격요건 중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 사항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4조)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재정능력 자격요건 삭제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대표자 자격기준 삭제

3.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및 제3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3층 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 052)241-7703, 팩스번호 : 052)241-7709
- 전자우편(E-mail) : jinju123@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¹⁾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보호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허가기준) <u>법 제6조제2항</u>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1조(목적)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6조제3항----- ----- ----- ----- --.</p> <p>제4조(허가기준) <u>법 제6조제3항</u>----- ----- -----.</p>

신 · 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90%;">허 가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d> </tr> </tbody> </table>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90%;">허 가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d> </tr> </tbody> </table>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공업7급 정진주(241-7703)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전년도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2)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²⁾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195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동*시가스 대표이사 *재*		
주소	울산광역시 *구 *포* *60-*0		
점용 위치	○ 양정동 엽포로 509 일원	노선명	○ 대2-1
점용 목적	○ 도시가스관 절단공사	점용 면적	○ L = 3m ○ A(일시) = 5.4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